

무배당하나포인트저축보험

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

이 유 서

최초 1년동안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하는 금리연동형상품(ISP: Interest Sensitive Product)을 특판용으로 개발하여,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VIP 고객을 만족시키는 저축성보험을 개발하고자 함.

확 인 서

무배당하나포인트저축보험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, 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. 끝.

2005년 1월 일

하 나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

선임계리사 윤 기 수

사 업 방 법 서

(사업방법서 별지)

무배당하나포인트저축보험

1. 보험종목 및 명칭

무배당하나포인트저축보험

2. 보험료 납입기간, 보험기간

보험료 납입기간	보험기간
일시납	5년
	7년
	10년
	15년

3. 가입연령

보험기간	남자	여자
5년	만 15세~66세	만 15세~70세
7년	만 15세~64세	만 15세~70세
10년	만 15세~61세	만 15세~69세
15년	만 15세~56세	만 15세~64세

4. 보험료 납입주기

일시납

5. 납입보험료 한도

기본보험료 : 100만원 - 50억원

6. 배당에 관한 사항

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음.

7.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

일시납보험료의 100%로 함.

8. 저축계약 순보험료의 부리이율에 관한 사항

① 이 보험의 저축계약 순보험료에 대한 부리이율은 「공시이율」로 한다.

②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, 공시이율의 계약건별 적용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최초 1년간은 확정 적용하며, 2차년도 이 후 매월 적용한다. 회사는 운용자산 이익률과 지표금리를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,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,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%를 최저한도로 한다.

③ 공시기준이율의 산출

-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 지출율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출 평균하여 산출한다.

공시기준이율 산출식 = (내부지표 + 외부지표) / 2

- 내부지표 산출식 =
$$\frac{2 \times (I - E)}{A_6 + A_0 - (I - E)} \times \frac{12}{6} \times 100$$

- I: 직전 6개월간 투자 영업수익
- E: 직전 6개월간 투자 영업비용
- A: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운용 자산의 월말 잔액.

A₆: 산출시점 직전 6개월초 현재 운용자산

A₀: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

- 외부지표 산출식 = (B1 + B2 + B3) / 3

- B1: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- B2: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- B3: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
- 가중이동평균이율 (B_i) =
$$\frac{B_i(-3) \times 1 + B_i(-2) \times 2 + B_i(-1) \times 3}{6}$$

B_i(-3): 산출시점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

B_i(-2): 산출시점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

B_i(-1): 산출시점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

-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.
-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무보증 회사채 (AA-) 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.
- 정기예금이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(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을 제외한다.) 중 전년도 원화예수금(말잔)기준 상위 5개은행의 15일자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기본이율을 산출평균한 이율로 한다. 단, 전년도 원화예수금(말잔)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은행을 정한다.
-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,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

15 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및 회사채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.

- 세부 지표 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,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.
 -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내부지표 및 외부지표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산출한다. 다만, 조세특례 제한법 제 86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.
- ④ ②호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(②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)의 해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.
- ⑤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 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한다.
- ⑥ 부리이율은 연복리 3.0%를 최저한도로 한다.
- ⑦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른다.
- ⑧ 3년 미만 경과 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

보험료 납입경과기간	중도해지이율
1년미만	Max(「공시이율」의 60%, 3.0%)
1년이상 2년미만	Max(「공시이율」의 70%, 3.0%)
2년이상 3년미만	Max(「공시이율」의 80%, 3.0%)

9. 기초율 변경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

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.

10. 기타

가.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

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, 인출 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.5% 이내로 한다. 단,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적립액이 일시납보험료의 10%이상이어야 한다.

- ① 계약자가 퇴직한 경우
- ②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휴업
- ③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
- ④ 계약자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

- ⑤ 계약자가 소득이 감소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
- ⑥ 기타 계약자가 가계생활자금, 학자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립액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
단, 1 회 적립액의 인출은 해약환급금의 25% 범위 내에서, 보험년도 기준 년 4 회에 한함.

나.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전환에 관한 사항

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연령에 의하여 계산한다.
- ②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.

다. 동 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영한다.

(별첨 제 1 호)

보험증권의 서식

(별첨 제 2 호)

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